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7년 9월 12일

제안자 : 이영복 의원

□ 수정이유

-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로 한정하여 도내 농어민을 보호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내용의 표현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2조제3호에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추가
- 제2조 내지 제11조와, 제13조의 “BIG충북마크”를 “도 품질인증마크”로 각각 수정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산물가공품”이라 함은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을 말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와, 제13조의 “BIG충북마크”를 “도 품질인증마크”로 각각 수정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p>3. “농산물 가공품”이라 함은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을 말한다.</p>	<p>3. “농산물 가공품”이라 함은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을</p>
<p>4.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이하 “BIG충북마크”라 한다.)”라 함은 충청북도 브랜드 슬로건을 말하며 그 표시는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 매뉴얼에 의한다.</p>	<p>4.....(.....“도 품질인증마크”.....).....</p>
<p>제3조(대상품목) BIG충북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의 상품류 구분에 의거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대상품목) 도 품질인증마크</p>
<p>제4조(사용신청) ①BIG충북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서 단일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출하하는 공동연합마케팅조직은 대표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사용신청) ① 도 품질인증마크..... ②(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사후관리)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품질인증 농특산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 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p> <p>②품질관리공무원은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도지사는 <u>BIG충북마크</u>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p>	<p>제7조(사후관리) ①(제정안과 같음)</p> <p>②(제정안과 같음)</p> <p>③.....<u>도 품질인증마크</u>.....</p> <p>.....</p> <p>.....</p> <p>.....</p> <p>.....</p> <p>.....</p>
<p>제8조(사용권 정지) 도지사는 <u>BIG충북마크</u>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BIG충북마크</u> 사용권을 정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인증 받은 품목의 품위가 일부 손상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품목을 1년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p>제8조(사용권 정지) <u>도 품질인증마크</u>.....</p> <p>.....</p> <p>.....<u>도 품질인증마크</u>.....</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p>3. <u>BIG충북마크</u>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p> <p>4. 그밖에 도지사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3. <u>도 품질인증마크</u></p> <p>.....</p> <p>.....</p> <p>4. (제정안과 같음)</p>
<p>제9조(사용권 취소) ①도지사는 <u>BIG충북마크</u>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BIG충북마크</u>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p> <p>1. <u>BIG충북마크</u>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p> <p>2. 품질인증 받은 품목의 품위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인증 받지 아니한 품목에 <u>BIG충북마크</u>를 사용하는 경우</p> <p>3.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산업표준화법」, 「축산물가공처리법」등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p>	<p>제9조(사용권 취소) ①.....</p> <p><u>도 품질인증마크</u>.....</p> <p>.....</p> <p>.....<u>도 품질인증마크</u>.....</p> <p>.....</p> <p>1. <u>도 품질인증마크</u>.....</p> <p>.....</p> <p>.....</p> <p>2.</p> <p>.....</p> <p>.....<u>도 품질인증마크</u>.....</p> <p>.....</p> <p>3.(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4. 제8조의 <u>BIG충북마크</u> 사용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 <u>BIG충북마크</u>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p>	<p>4.도 품질인증마크</p> <p>.....</p> <p>②.....</p> <p>.....<u>도 품질인증마크</u>....</p> <p>.....</p> <p>.....</p> <p>.....</p>
<p>제10조(위원회 설치) ① <u>BIG충북마크</u> 사용의 지정·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정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④위원은 농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10조(위원회 설치) ① <u>도 품질인증마크</u>.....</p> <p>.....</p> <p>.....</p> <p>.....</p> <p>.....</p> <p>②(제정안과 같음)</p> <p>③(제정안과 같음)</p> <p>④(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⑤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⑦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검토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인증 농특산물 품목선정에 관한사항 2. BIG충북마크 사용권의 지정·취소에 관한사항 3. BIG충북마크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사항 4. BIG충북마크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p>제12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제정안과 같음).</p> <p>⑥(제정안과 같음)</p> <p>⑦(제정안과 같음)</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u>도 품질인증마크</u>..... 3. <u>도 품질인증마크</u>..... 4. <u>도 품질인증마크</u>..... 5. (제정안과 같음) <p>제12조(실비보상 등)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3조(상표사용자 지원 및 홍보)</p> <p>①도지사는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상품성제고를 위하여 <u>BIG충북마크</u>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p> <p>②도지사는 <u>BIG충북마크</u>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을 국내외 전시 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p> <p>③도지사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u>BIG충북마크</u>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제13조(상표사용자 지원 및 홍보)</p> <p>①.....<u>도 품질인증마크</u></p> <p>②.....<u>도 품질인증마크</u>.....</p> <p>③.....<u>도 품질인증마크</u></p>
<p>제14조(사무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제14조(사무위임) (제정안과 같음)</p>
<p>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p>
<p>부 칙</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정안과 같음)</p>